

종합시험 규정

□ 제정 : 1998. 05. 21

□ 개정 : 2017. 05. 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3조 및 동 시행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자격) 졸업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졸업논문 시행규정 제3조에 규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라야 한다.

제3조(응시횟수) 종합시험은 매년 4월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험과목) ① 종합시험 과목은 영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전공과목 시험도 부과할 수 있으며 과목당 시험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대학의 학부·학과의 특수성상 다른 외국어를 시험과목으로 할 수 있고 시험시간도 증감 할 수 있다.

③ 2항의 경우 학부·학과의 심의를 거쳐 교무입학처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5조(배점 및 합격기준) 종합시험은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매과목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6조(재응시 및 과목합격) ① 종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 졸업이전까지 계속 재응시할 수 있다. 이때 재응시자는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합시험은 과목별 합격을 인정할 수 있다.

제7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종합시험의 부정행위자는 전과목을 무효로 하며 시험 합격후 부정행위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

제8조(시험절차 및 응시요령) ① 종합시험은 최종학년초의 시험실시 1개월 이전에 시험의 시기, 과목, 절차 등 시험요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 학부(과)장은 시험요강 공고 후 2주 이내에 소정서식에 따라 과목별 응시자와 그 인원수를 파악하여 교무입학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